

아리야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659호 2024. 4. 26. (금)

【규 칙】

- 정선군 규칙 제1404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
규칙.....1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관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규 칙

제4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4. 4. 12.)에서 의결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4월 26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규칙 제1404호

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, 별표 8,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단원의 수당

□ 출연료 및 연습비

명예단원	비상임단원				단원(공통)
200,000원	10년 이상	7년 이상 ~ 10년 미만	3년 이상 ~ 7년 미만	3년 미만	연습비
	180,000원	170,000원	160,000원	150,000	79,000원

비고

1. 위 표에서 3년 이상, 3년 미만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.
2. 연습비는 명예단원과 비상임단원이 연습에 참여 할 경우 지급되며, 근무시간 외 연습을 할 경우에는 연습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.

[별표 8]

상임단원 기본급여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기준
단무장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2호봉 상당액
수석단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1호봉 상당액
일반단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

[별표 11]

상임단원제수당

(단위 : 원)

구 분	지급기준	비고
정근수당·가산금	공무원수당 규정 준용 ※ 정액급식비	
명절휴가비		
정액급식비		
직책수당	수석·단무장 : 월 20만원 차석 : 월 10만원	
예능연구수당	수석 : 월 15만원 차석 : 월 12만원 일반단원 : 월 10만원	

□ 개정이유

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단원의 기본급여와 수당 등 임금구조 개선을 통한 예술단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,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능연구수당을 신설하여 예술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[별표 2] 단원의 수당 변경

- 단원의 출연료 및 연습비 기준 변경

◦ (기존)

명예단원		비상임단원		단원(공통)
3년 이상	3년 미만	3년 이상	3년 미만	연습비
200,000원	180,000원	150,000원	120,000	60,000원

◦ (변경)

명예단원	비상임단원				단원(공통)
	10년 이상	7년 이상 ~ 10년 미만	3년 이상 ~7년 미만	3년 미만	연습비
210,000원	180,000원	170,000원	160,000원	150,000원	79,000원

나. [별표 8] 상임단원 기본급여 지급기준 변경

- 상임단원 직책별 기본급여 지급기준 변경

◦ (기존)

구 분	지급기준
상임단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

◦ (변경)

구 분	지급기준
단 무 장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2호봉 상당액
수석단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1호봉 상당액
일반단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

다. [별표 11] 상임단원제수당 중 예능연구수당 신설
- 예술단원의 기량 향상 도모를 위한 예능연구수당 신설

구 분	지급기준
예능연구수당	수석단원 15만원
	차석단원 12만원
	일반단원 10만원